

월간
자본시장 제도동향

2017년 2월호



목 차

국내 자본시장 제도동향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
- 나. 금융투자업규정

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해설서
- 나.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
- 다.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

해외 자본시장 제도동향

1. SEC·FINRA 규정

- 가. SEC
- 나. FINRA

2. EU집행위원회·ESMA 규정

- 가. ESMA 규정





3. 금융청 규정

가. 금융청 규정

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 - 가.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
 - 나. 금융투자업규정

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일부 개정(2017/1/1개정·시행)

1) 목적

-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고, 분쟁조정 및 소송 등을 통한 사후구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함
 - 정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‘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’ 제정 노력을 지속 중임
 - 금소법 제정 이전에도 추진이 가능하거나 시행에 있어서 금융회사에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‘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’ 개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

2) 주요 내용

- 금융회사 판매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 개선
 - (기존)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임·직원에게 의한 과도한 구매권유, 부적합한 상품판매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피해 상존
 - 특히, 금융상품 판매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된 보상체계가 불완전판매유발의 중요한 원인
 - (개정) 인센티브 체계 설계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판매실적, 부가상품 판매 등에 따라 보상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반영되지 않도록 유도
 - (소비자 만족도 관련 요소 반영) 민원건수, 불완전판매 건수,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등도 균형있게 반영
 - (CCO 역할 강화) CCO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인센티브 체계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를 CEO에게 보고하여 개선을 건의(필요시 성과평가지표(KPI)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·보상체계 개선을 건의)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 및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

□ 금융회사 보관자료 접근성 강화

- (기존) 분쟁조정·소송수행 시,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 등 금융회사 보관 자료의 원활한 제공이 필요
 - 기존에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청 시 금융회사별로 제공기준 등이 상이하고 불명확하여 사후 권리구제에 차질
- (개정)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권리구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, 소비자의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포괄적 열람·청취권 보장
 - 금융회사가 기록·유지·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열람·청취 요구시 금융회사는 일정기간 내에 이에 따를 의무를 규정
 - 다만, 제도 오·남용 방지 등 차원에서 분쟁조정·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및 그 준비를 위한 목적 등으로 행사 요건을 제한

□ 금융회사 민원·분쟁 등 관련정보 공시 개선

- (기존) 모범규준 등에 근거하여 금융회사와 금융협회는 소비자보호 우수사례, 민원건수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, 한 화면에 통합하여 공시하고 있지 않거나 단순 나열 또는 첨부파일 형태로 게시되는 등 소비자 이용에 불편
- (개정) 소비자들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
 -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및 보호전략 등 기존에 규정된 항목에 금융판례, 분쟁조정 현황, 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등을 추가
 - 협회에서 회사별 민원건수, 소송현황 등 소비자보호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공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□ 금융취약계층 편의성 제고

- (기존) 고령자·장애인 등의 경우 신체적·정신적 특성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 소비자에 비해 강한 보호와 편의 제공이 필요하나, 기존에는 이들의 금융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보호체계 부재
- (개정) 금융회사에 금융취약계층(65세 이상 고령자·장애인 등)이 정확한 상품 이해 및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지침 마련 의무 부여(세부사항은 협회 가이드라인 규정)
 - (고령자 보호) 고령자에 대해 상품 관련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복잡하거나 위험한 금융상품(ELS, DLS, ELF 등 파생연계 금융상품, 후순위채권 등)은 권유를 자제



- (장애인 접근성) 금융회사의 장애유형별 세부 고객 응대지침 마련 및 점포별 전담 직원 배치 등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 제고(핀테크 등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원칙도 규정하고 금융회사에게 핀테크 업무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편의성 제고 의무 부과)

- (불완전 판매방지 교육)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불완전판매 유발 직원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고 맞춤형 교육 실시
 -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기준(예: 관련 민원이 1년에 3건 이상)을 마련하여 해당 직원에 대해 소비자보호, 민원·분쟁조정 관련 집중교육 실시 등

나.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(2017/1/24개정·시행¹⁾)

1) 목적

- 「펀드상품혁신방안(‘16.5월)」 및 기타 자본시장제도개선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,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 개선(4-54조)
 - 펀드가 매매한 파생상품의 정확한 위험산출이 가능하도록 옵션·스왑거래 산정산식을 개선
 - 거래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감원장이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헤지거래로 지정하고 위험평가액 감액을 허용
-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산정기준 개선(3-50조)
 -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외국환은행과 동일하게 직전영업일부터 과거 1개월간 산술평균 잔액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
 - 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기준을 ‘매영업일 잔액’에서 ‘1개월 이동평균’으로 변경

1) 다만, 4-54조의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

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시 자기자본 산정방식 마련 및 자기자본심사의 신뢰성 확보(4-105조)

- 등록 심사시 자기자본은 가장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,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 증감액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
 - (기존) 별도 기준 시점이 없어 신청회사가 최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
 - (개정) 등록신청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+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·자본잉여금 증감액 반영
- 중개업자 등록요건 중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 요건(최소 5억원)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, 외부감사인 의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

□ 그 밖의 조문정비(2-14조, 4-16조)

- 금산법(24조)에 따른 출자승인 업무 중 금감원장 위임사항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삭제(2-14조 8항, 9항)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

2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일부 개정(2017/1/17개정·2017/1/23시행)

1) 목적

-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기업 중 영업·재무상태에 중대한 훼손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약식심사요건을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수준으로 영업·재무관련 약식심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, 최소한의 규모 요건을 신설
 - 영업지속성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엄격한 이익요건을 완화
 - (이익)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시현을 최근 사업연도 기준 당기순이익 시현으로 요건 완화
 - (이익률)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요건을 5%에서 3%로 완화
 - (이자보상배율)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이미 시현하고 있는 바, 금융비용 부담능력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 요건을 삭제
 -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훼손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준으로 요건 완화
 - (자본잠식 및 부채비율) 업종별 차이가 큰 부채비율 요건을 삭제하고 자본잠식 요건만 적용
 -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상장기업을 약식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모요건 신설
 - (매출액 및 자기자본) 매출액 300억 및 자기자본 300억 적용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

약식심사 대상기업 선정요건 개정 전·후 비교

구분	기존	개정
규모 요건	(신 설)	- 매출액 300억 이상
	(신 설)	- 자기자본 300억 이상
이익 요건	- 2년 연속 영업이익 & 당기순이익	-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
	- 영업이익률 5% 이상	- 영업이익률 3% 이상
	- 이자보상배율 2배 이상	(삭 제)
재 무 건전성 요 건	- 자본잠식이 없을 것	- 자본잠식이 없을 것
	- 부채비율이 100% 이하 또는, 업종평균 이하	(삭 제)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해설서
- 나.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
- 다.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해설서 일부 개정(2017/1/2개정·시행)

1) 목적

- 금투협·금융위·감독원 등 민간 공동으로 추진한 「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방안」의 후속조치로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개정을 추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최소계약기간 의무조항 폐지
 - (기존) 계약 최소약정 기간을 1년으로 설정
 - 해당 의무조항은 상위 법령에 없는 조항으로 규제의 근거가 없으며, 계약기간은 고객 요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
 - (개정) 투자자가 투자목적, 계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약정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최소약정 의무 조항 폐지
- 운용정보 조회 가능기간 규제 폐지
 - (기존) 투자자가 일정 시점(t+2일) 이전에는 운용정보 조회 금지
 - 상위법령상 규제의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될 수 있음
 - (개정) 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폐지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

나.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일부 개정(2017/1/19개정·2017/1/24시행)

1) 목적

- 공정위의 약관 시정 요청에 따라, 수수료 기준 게시 방법 및 회사 면책 사유 중 일부를 삭제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수수료 기준 변경 절차 정비(5조)
 - (기존) 수수료 기준 변경 시 고객의 동의 및 이의신청 절차 없이 전자적 장치를 통한 게시만 하여 고객에게 불리
 - (개정) 수수료 기준 변경 절차를 삭제하여, 약관 변경 절차와 일원화
- 회사 면책 관련 사항 정비(8조)
 - (기존) 법령상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고객에게 불리
 -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자금융사고의 면책사유와 해당 약관 조항과 상충
 - (개정) 천재지변, 전쟁, 테러 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, 화재,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삭제

다.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 제정(2017/1/19개정·2017/1/20시행)

1) 목적

-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(‘16.8.1 시행)에 따라 “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”의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을 관련 협회에서 정하기 위함
 - ‘16년 하반기부터 6개 금융협회(금투, 은행, 생보, 손보, 여신, 저축은행) TF를 구성하여 보고서 작성기준 마련
 - 금융회사는 매년 동 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까지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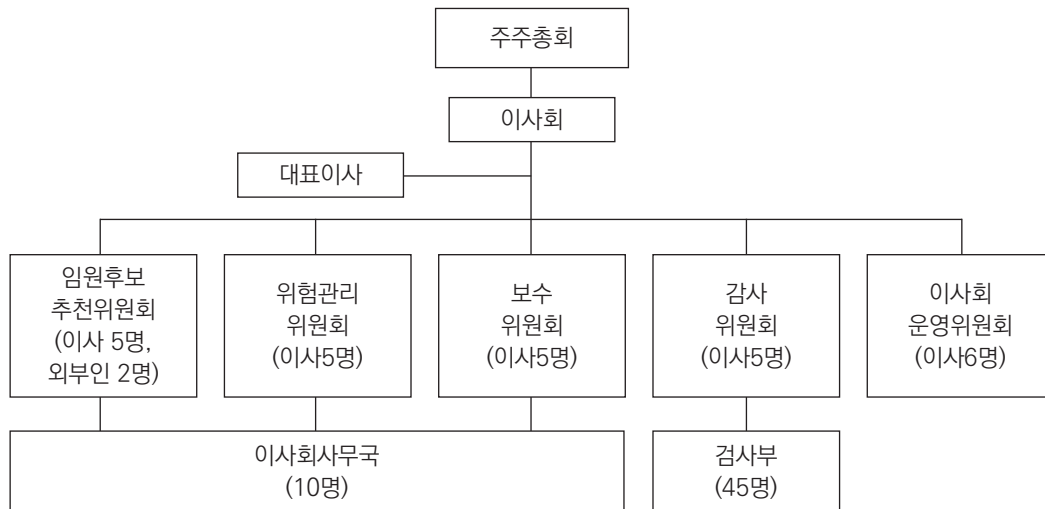


2) 주요 내용

□ 지배구조 일반: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, 현황(조직도) 등

- <작성지침> 회사가 지배구조와 관련해 갖고 있는 원칙(기본방향)을 기술하고 원칙을 구체화한 정책을 상세히 기술

○○금융회사 조직도



□ 이사회: 역할(권한과 책임), 구성, 활동내역, 직무평가,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아닌 경우 그 사유

- <작성지침> 법령·정관 및 내규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회 역할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기술, 이사회의 실제 구성 현황을 기술

□ 임원후보추천위원회 : 역할, 구성, 활동내역, 평가, 임원후보(대표이사, 대표집행임원, 감사위원, 사외이사,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) 추천 관련사항

- <작성지침> 상임·사외·비상임 이사 구성비, 독립성, 전문성을 감안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기술

□ 사외이사 활동·보수: 사외이사 활동내역, 평가, 보수 등



- <작성지침>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률(참석회수·개최회수)을 기재하고 활동내용 중 특 이사항 및 활동시간을 기재

구분 사외 이사명	이사회			이사회내위원회												활동 시간 실적
				감사위원회			리스크관리위원회			보수위원회			임원후보추천위원회			
	개최	참여	찬성	개최	참여	찬성	개최	참여	찬성	개최	참여	찬성	개최	참여	찬성	
○○○	14	13								4	4					120시간
□□□	13	12					7	6								110시간
△△△	5	5		2	2					2	2		1	1		

- 최고경영자 경영승계: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,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, 자격충족 여부, 후보군 관리현황 등
 - <작성지침>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이사회가 마련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내부규정 마련 절차와 규정 본문을 요약하여 기술
- 감사위원회·위험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: 역할, 구성, 활동내역 및 평가
 - <작성지침> 법령, 내규 등에서 위원회에 부여한 구체적 역할을 각 역할별로 구분하여 기술
-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등
 - <작성지침> 연도 중 지배구조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·행정지도 등과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조치사항을 기재
- 보수위원회: 구성, 권한과 책임, 활동내역 및 평가
 - <작성지침> 회사의 보수 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을 요약하고 보수위원회의 관련 규정명 및 설치근거를 서술
- 보수체계: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, 보수 세부사항(보수 구분, 금액, 지급형태, 지급액) 등
 - <작성지침> 금융회사 전체 또는 주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지표,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, 금융회사 전체(또는 중요 사업부)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 방법 기술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

- 1. SEC·FINRA 규정
 - 가. SEC
 - 나. FINRA

1. SEC·FINRA 규정

가. SEC

- 전자투자자문, MMF, 고령 투자자의 금융피해를 SEC 준법조사·검사국(OCIE: Office of Compliance Inspections and Examinations)의 2017년 중점 검토분야로 정함(01/12)
 - 은퇴를 대비하여 투자하는 개인을 포함하여 소매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전체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함

나. FINRA

- 미국 거래소시장의 통합감사추척시스템 망관리계획(CAT NMS Plan)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관한 규칙 도입을 위해 FINRA 규칙 개정안 제출(01/17)
 - 정의조항, 클럭동기화(clock synchronization), 회원사데이터 보고, 고객정보 보고, 회원사정보 보고, 타임스탬프(time stamps), 클럭 동기화 규칙위반(clock synchronization rule violations), 시스템연결 및 데이터전송, 시스템개발 및 테스트, 기록유지, 데이터의 적시성·적절성·정확성·완전성 및 컴플라이언스 기간 관련하여 일련의 규칙(FINRA Rule 6800 Series)을 도입하고자 함

연구원 박수연(02-3771-0691, syupark@kcmci.re.kr)

2. EU집행위원회·ESMA 규정

가. ESMA

- ESMA는 MiFID II 하의 거래보고 요건(transaction reporting requirements)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발간 (1/16)
 - ESMA는 2016말 MiFID II와 MiFIR 하의 거래보고(transaction reporting)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
 - 추가적으로, ESMA는 MiFID II와 MiFIR 하의 거래보고(transaction reporting)와 관련하여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다룬 기술적인 요건과 템플릿(technical requirements and templates)도 발간
 - MiFID II와 MiFIR는 다음의 영역에서 보고주체(reporting entities)에 대한 규제요구 사항의 범위를 확대
 - 참고자료(reference data), 투명성(transparency), double volume cap, 거래보고(transaction reporting)
 - MiFID I 하의 보고서체계로부터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, ESMA는 MiFID II와 MiFIR의 적용 이전에 먼저 정보수집(data collection)을 시작할 예정임
 - 2018년 1월 3일부터 MiFID II와 MiFIR가 회원국 내에서 적용될 예정이지만, ESMA는 관련 보고서작성 주체에 적절한 시스템구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, 정보수집을 먼저 시작할 예정

- EBA와 ESMA는 CRR과 EMIR 사이에 마진요건(margin requirements)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(1/18)
 - EBA와 ESMA는 CRR(No 575/2013)과 EMIR(No 648/2012)의 필수자기자본규정(Capital Requirements Regulation)의 기능에 대한 합동보고서를 발간
 - 이 보고서는 신용(credit), 시장(market), 상대방(counterparty) 신용위험에 대한 CRR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함
 - CRR의 요건들은 비청산 행위와 상호운영가능성 약정이 적용되는 행위를 위한 특정금융재원에 의해 보장되지 않은 리스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
 - 또한, EBA와 ESMA는 CRR 제515조(1)의 명령과 관련된 특정쟁점, 특히 CCP를 운영하는 기관에 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춤
 - 이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 사항은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요구사항의 중복을 피하고 규제 당국의 규제위험 증가 및 모니터링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고 있음



- 특히, 주요내용은 (a) 은행 면허를 소지 한 CCPs를 위한 자본요건, (b) CCP를 위한 레버리지와 유동성, (c) 대규모 익스포져(Large exposures), (d) MPoR 적용의 차이, (e) 청산회원에 대한 고객의 익스포져 등임

□ ESMA는 대안성과측정지침(Alternative Performance Measures Guidelines)에 대한 새로운 질의응답(Q&A)을 공간(1/27)

- ESMA는 상장발행인(listed issuers)을 위한 대안성과측정지침(Alternative Performance Measures Guidelines) 시행에 관한 6가지 질의응답을 공간
 - 대안성과측정(Alternative Performance Measures)은 해당 재무보고 체계에서 정의되거나 지정된 재무측정 이외에 과거 또는 미래의 재무성과, 재무상태 또는 현금흐름에 대한 재무측정임
 - 이 지침은 발행인(issuers) 또는 투자설명서(prospectus) 작성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공개한 대안성과 측정(Alternative Performance Measures)에 적용됨

□ ESMA는 업데이트된 MiFID II 상의 투명성(transparency)과 시장구조(market structure) 주제에 대한 질의응답(Q&A) 문서를 공간(1/31)

- ESMA는 개정금융상품지침 및 규정(MiFID II/MiFIR) 상의 투명성 및 시장구조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시행에 대한 두 가지 질의응답을 업데이트 함
 - MiFID II·MiFIR은 내부주문집행(systematic internaliser) 체제를 주식 이외의 유사주식상품(equity-like instruments)와 비주식상품(non-equity instruments)으로 확대
 - 투자회사가 내부주문집행(systematic internaliser)을 할 수 있는 규모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금융 투자회사가 정량적 계산(quantitative calculation)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을 소개함
- 질의응답은 새로운 내부주문집행(systematic internaliser) 체제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하는 아래의 네 가지 새로운 질의응답이 포함됨
 - 기업이 그룹의 일부이거나 EU에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 계산(calculation)을 수행해야하는 수준
 - 어떤 거래가 계산에서 제외되고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
 - 파생상품, 채권 및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해 자산분류(asset class) 계산이 어떤 수준에서 수행되어야 하는지 여부
 - 비주식상품(non-equity instruments)의 내부주문집행(systematic internaliser)이 그들의 호가제출(quoting obligations) 중 일부를 어떻게 준수 할 수 있는지 여부



- ESMA는 시장구조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추가하여 새로운 질의응답을 업데이트 함
 - MTF(Multilateral Trading Facility) 운영자가 본인 소유 MTF의 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
 - 제3자 데이터센터(third party data centre)에 전자시스템이 위치한 거래소(trading venues)가 공동위치조항(co-location provisions)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
 - 시장조성자(market makers)와 관련하여 매우 특정한 조건하에서 투자회사로서 인가 의무를 면제 해주는 MiFID II 2조(1)(d)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

□ ESMA는 유럽시장인프라규제(EMIR)에 관한 질의응답을 공간(2/2)

- 업데이트 된 질의응답(Q&A)에는 2017년 11월 1일에 적용될 보고에 관해 개정된 기술표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새로운 질의응답이 포함
- 해당보고 주체가 신청 날짜에 모든 미결 거래를 갱신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함
- 신고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만(예: 거래가 수정 된 경우) 오래된 미 지불 거래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
- 거래저장소(Trade Repositories)에 의해 보고서가 검증되는 방법을 설명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

3. 금융청 규정

가. 금융청 규정

□ 금융청은 ‘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한 노력과 시장거래소를 둘러싼 제도 정비에 대해서’(國民の安定的な資産形成に向けた取組みと市場・取引所を巡る制度整備について)(2016년 12월 22일)라는 제목의 금융심의회 시장워킹그룹보고서(안)을 공표함(1/21)

- 이에 대한 의견을 2017년 2월 20일(월) 오후 5시까지 받을 예정임
- [고객 중심의 업무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·공표 등]
 - 원칙 1) 금융사업자는 고객 중심의 업무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·공표하는 동시에, 해당 정책에 관한 활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하며, 당해 정책은 더 나은 업무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함
- [고객의 최선 이익을 추구]
 - 원칙 2) 금융사업자는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보유하고 고객에게 성실·공정하게 업무를 하고,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며, 금융사업자는 이러한 업무운영이 기업문화로 정착하도록 힘써야 함
- [이해 상충의 적절한 관리]
 - 원칙 3) 금융사업자는 거래에서 고객과의 이해상충의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충돌을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, 금융사업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미리 수립해야 함
- [수수료 등의 명확화]
 - 원칙 4) 금융 사업자는 명목을 불문하고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기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, 당해 수수료 등이 어떤 서비스의 대가에 관한 것인지를 포함하여 고객이 쉽게 해석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함
- [중요한 정보의 알기 쉬운 제공]
 - 원칙 5) 금융사업자는 고객과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것을 근거로 상기 원칙 4에 나타난 사항 외에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판매·권유 등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함
- [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]
 - 원칙 6) 금융사업자는 고객의 자산상황, 거래경험, 지식 및 거래목적 요구를 파악하고, 해당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·서비스의 제공, 판매·추천 등을 실시해야 함



— [직원에 대한 적절한 동기부여 등]

- 원칙 7) 금융사업자는 고객의 최선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, 고객의 공정한 취급, 이해상충의 적절한 관리 등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보수·실적 평가체계, 종업원 연수 기타 적절한 동기 부여의 틀과 적절한 지배체제를 정비해야 함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